

2010년도 국정감사

기획재정위원회

이 자료는 10.4(월) 10:00 이후부터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# 업 무 보 고

---

2010. 10. 4

기 획 재 정 부

- I.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.....1
- II.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.....3
  - 1. 대외경제 여건 ..... 3
  - 2. 국내경제 동향 ..... 4
  - 3. 향후 정책방향 ..... 6
- III. 주요 정책과제 .....7
  - 1. 금년도 세계개편방향 ..... 7
  - 2. 2011년 예산편성 ..... 9
  - 3.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 ..... 11
  - 4.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..... 13
  - 5. 미래 성장동력 확충 ..... 15
  - 6. 외환시장 안정 ..... 17
  - 7. 국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..... 18
  - 8. 공공기관 선진화 ..... 19
  - 9. G-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..... 20
  - 10. 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 ..... 21
- <첨부>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 ..... 22

# 1. 기획재정부 일반 현황

## 1. 주요기능

- 중·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
- 경제·재정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
- 예산·기금의 편성·집행·성과관리
- 화폐·외환·국제금융·경제협력
- 내국세제·관세
- 국가채무관리·국고·정부회계·국유재산·공공기관 관리

## 2.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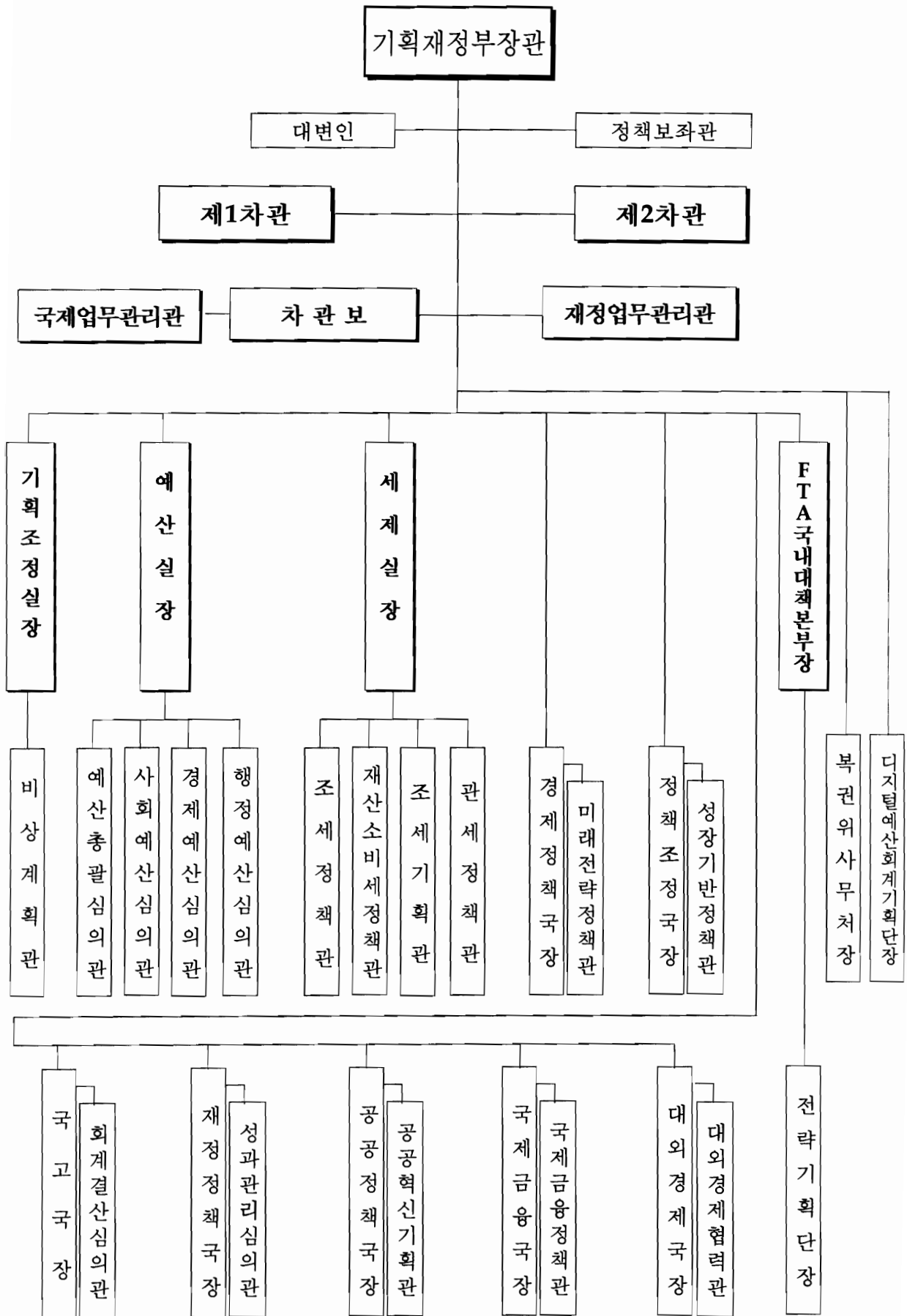
- 본부 : 1차관보, 2관리관, 3실, 1본부, 1대변인, 7국, 17관·단, 88과(담당관·팀 포함)
  - 기획조정실(비상계획관), 예산실(예산총괄심의관, 사회예산심의관, 경제예산심의관, 행정예산심의관), 세제실(조세정책관, 재산소비세정책관, 조세기획관, 관세정책관)
  - FTA국내대책본부(전략기획단장)
  - 경제정책국(미래전략정책관), 정책조정국(성장기반정책관), 국고국(회계결산심의관), 재정정책국(성과관리심의관), 공공정책국(공공혁신기획관), 국제금융국(국제금융정책관), 대외경제국(대외경제협력관)
- 소속기관(1) : 복권위원회사무처
- 기 획 단(1) :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
- 외 청(4) :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

## 3. 정원

(명)

구 분	정무직	일반직	별정직	계약직	기능직	계
본 부	3	784	8	10	74	879
복권위사무처		25			1	26
계	3	809	8	10	75	905

# < 機 構 表 >



## II.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

### 1. 대외경제 여건

◆ 세계경제는 **완만한 회복세**가 지속되고 있으나, **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** 등 불확실성 상존

□ **[미 국]** 2/4분기 성장률(전기비연률 1.7%) 하락, 주택시장 및 고용 부진 지속 등으로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

○ 하반기중 성장세가 약화되겠지만, 기업실적 개선,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**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**으로 전망

□ **[일 본]** 2/4분기에 성장세가 둔화(전기비연률 1.5%)되었으며,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둔화, 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인해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증가

\*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하여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(8.30일)하고 엔고 저지를 위해 약 2조엔 규모의 시장개입조치 시행(9.15일)

□ **[유 로]** 2/4분기에는 독일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(전기비연률 3.9%)를 나타냈으나,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 등 불안요인 지속

□ **[중 국]** 소비·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/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0%대의 성장세 시현

○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등 과열억제 정책 등으로 하반기중 성장률이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

주요국의 GDP 성장률(%)

	09년					10년	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
미국(전기비연률)	△2.6	△4.9	△0.7	1.6	5.0	3.7	1.7
일본(전기비연률)	△5.2	△16.4	9.7	△0.3	3.4	5.0	1.5
유로(전기비연률)	△4.0	△9.6	△0.5	1.7	0.7	1.3	3.9
중국(전년동기비)	9.1	6.2	7.9	9.1	10.7	11.9	10.3

## 2. 국내경제 동향

◆ 8월중 휴가철,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하였으나, 전반적인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□ [경 기] 작년 2/4분기 이후의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, 8월에는 휴가철·기상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

○ 8월 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라인 보수·교체, 기상악화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(광공업생산 △1.0%, 서비스업생산 △0.2%)

\* 8월 강수일수(전국기준, 기상청) : (평년) 12.6일 → (금년) 18.7일

- 자동차 생산 감소(기여도 △1.5%p)를 제외하면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.5% 증가

(단위 : %)	2009년					2010년			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	7월	8월
광공업 생산(전기비) (전년동기비)	- △0.8	△2.1 △15.7	11.3 △6.1	6.9 4.3	1.3 16.2	5.1 25.8	5.0 19.5	1.1 15.5	△1.0 17.1
서비스업 생산(전기비) (전년동기비)	- 2.0	0.4 △0.3	2.4 2.4	△0.1 1.9	0.8 3.7	2.5 5.7	0.6 4.0	△1.3 3.2	△0.2 4.2

○ 설비투자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소매판매도 8월에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완만한 증가세

○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둔화 등에 따라 부진이 지속

(단위 : %)	2009년					2010년			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	7월	8월
소매판매(전기비) (전년동기비)	- 2.6	1.0 △4.7	5.1 1.5	0.3 2.8	4.1 10.8	0.5 9.9	0.0 4.9	1.3 8.7	△0.7 9.3
설비투자추계(전기비) (전년동기비)	- △8.2	△11.3 △18.3	7.1 △12.9	3.4 △9.9	12.1 10.0	1.4 25.5	6.0 24.5	△3.0 33.7	6.2 39.8
건설투자(전기비) (전년동기비)	- 1.7	9.4 △5.6	3.5 4.5	△5.3 1.8	△1.4 5.0	5.4 2.0	△2.2 △3.9	△4.4 2.2	△5.5 3.0

□ **[고 용]** 공공부문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지만, 민간 부문 취업자수는 60만명 내외의 증가세 시현

\* 취업자 증감(만명) : (10.1/4)13.2 (2/4)43.3 (7) 47.3 (8) 38.6  
 - 공공 부문 : (10.1/4) 2.5 (2/4) 0.9 (7)△18.5 (8)△21.4  
 - 민간 부문 : (10.1/4)10.7 (2/4)42.4 (7) 65.8 (8) 59.9

□ **[대외 부문]**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 다만, 기저효과 등으로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둔화

\* 수출(억불) : (09.8) 289.5 (9)339.2, (10.6)419.5 (7)409.5 (8)375.3 (9)397.5  
 (%) : (09.8)△20.9 (9)△9.4, (10.6) 30.2 (7) 28.3 (8) 29.6 (9) 17.2

○ 경상수지는 수출호조로 2월부터 흑자흐름이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흑자 시현(10.1~8월 195.6억불)

\* 경상수지(억불) : (10.2)1.7 (3)18.0 (4)14.2 (5)38.2 (6)51.0 (7)58.7 (8)20.7

□ **[물가 및 부동산 시장]** 소비자물가는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급등으로 9월에 3.6% 상승하였으나,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2%내에서 안정세 지속

\* 소비자물가(%) : (10.2)2.7 (3)2.3 (4)2.6 (5)2.7 (6)2.6 (7)2.6 (8)2.6 (9)3.6  
 \* 근원물가(%) : (10.2)1.9 (3)1.5 (4)1.5 (5)1.6 (6)1.7 (7)1.7 (8)1.8 (9)1.9

○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

\* 아파트가격 (전월비, %) : (전국) (10.5) 0.1 (6) 0.0 (7)△0.1 (8) 0.0 (9) 0.2  
 (수도권) (10.5)△0.4 (6)△0.7 (7)△0.7 (8)△0.5 (9)△0.3  
 \* 아파트 거래량(천건) : (전 국) (10.4)44.0 (5)32.1 (6)30.4 (7)32.2 (8)31.0  
 (수도권) (10.4)11.9 (5) 9.0 (6) 8.0 (7) 8.4 (8) 8.1

□ **[금융시장]** 8월중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, 9월 들어 더블딥 우려 완화,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

\* KOSPI(기간말, p) : (10.5)1,641 (6)1,698 (7)1,759 (8)1,747 (9)1,873  
 - 외국인 순매수(기간중 조원) : (10.5)△6.3 (6) 0.7 (7) 2.9 (8)△0.6 (9) 4.3  
 \* 원/달러 환율(기간말, 원) : (10.5)1,200 (6)1,210 (7)1,187 (8)1,196 (9)1,140  
 \* 국고채 금리(3년 기간말 %) : (10.5) 3.58 (6) 3.86 (7) 3.80 (8) 3.55 (9) 3.32

### 3. 향후 정책방향

-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
  - 경기회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
  - 경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
  
-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
  - 일자리가 서민생활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
  - 저소득·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,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 추진
  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, 사업영역 보호,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 추진(9.29일 발표)
  -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서민·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
  
-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저출산·고령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
  - G-20 정상회의(11.11~12)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·사회 전반의 국격을 제고
  - 「제2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‘11~’15)」을 마련하고, 세출 구조조정,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강화
  - 녹색 R&D 확대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

### III. 주요 정책과제

#### 1. 금년도 세제개편방향

- ◆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
- ◆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·중산층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
- ◆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·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정비,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

#### 가. 일자리 창출 지원

-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
  - \* 투자금액의 7%를 세액공제하되, 「고용증가인원 × 일정금액 (1인당 1,000만원, 청년고용은 1,500만원)」을 공제한도로 설정
-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
  - 청소업, 경비업, 시장·여론조사업, 인력공급업 등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
-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(소득세·법인세 4년간 50% 감면)

#### 나. 서민·중산층 지원

-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(8%→6%)
- 음식·숙박업, 소매업 등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\* 일몰기한 2년간 연장
  - \* 30% 추가공제, 결제액의 2→2.6%, 소매업의 경우 1→1.3%
- 음식점 등이 매입하는 농·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\* 일몰기한 2년간 연장
  - \* 기준공제(3/103) → 우대공제(개인 8/108, 법인 6/106, 유흥주점 4/104)

## □ 대기업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

- 중소기업 경영안전 및 R&D개발 지원을 위해 **상생보증펀드** 및 **동반성장기금**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**세액공제제도(7%)** 신설
-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**세액공제제도\*** 일몰기한 **3년간 연장**

\* 지급기한 30일 이내 : 0.5%, 지급기한 30일~60일 : 0.15%

## **다. 지속성장 지원**

- 3D기술, 녹색기술, 차세대 LCD기술,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 동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(20%, 중소기업 30%) 대상에 포함
- '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**국제회계기준(K-IFRS)** 적용 의무화에 따라 **법인세법 보완**
- 출산 장려를 위해 **다자녀 추가공제 확대**

\* 2자녀 50만원 → 100만원,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 → 200만원

## **라. 재정건전성 제고**

-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(의사, 변호사, 학원 등)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**세무검증제도** 도입
-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**비과세·감면제도 대폭 정비**(폐지 16건, 축소 4건)
- 미용목적 성형수술, 수의사 **애완동물 진료용역**, 성인 대상 **영리학원**(무도학원, 자동차학원)에 대해 **부가세 과세**('11.7월 이후)

## **마. 부동산세제 보완**

-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**중과\*** 완화제도(일반 세율 6~35%) **일몰기한 2년간 연장**

\* 중과세율 : 2주택 50%,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60%

- 수도권(서울 제외) **매입임대사업자**에 대한 **세제지원\*** 요건 **완화\*\***

\* 양도세 중과완화, 증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

\*\* 5호·10년이상, 3억원·85㎡이하 → 3호·7년이상, 6억원·85㎡이하

## 2. 2011년 예산편성

### 가. 2011년 예산의 모습

- (총수입) '10년 대비 8.2% 증가한 314.6조원으로 전망
  - 조세부담율은 '10년 수준(GDP대비 19.3%) 유지
- (총지출) '10년 대비 5.7% 증가한 309.6조원
  - 총수입 증가율(8.2%)보다 2.5%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,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개선
- (재정수지) '10년( $\Delta 2.7\%$ ) 보다 0.7%p 개선된  $\Delta 2.0\%$ 
  - '13~'14년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
- (국가채무) '10년(36.1%) 보다 0.9%p 감소한 35.2%
  - 일반회계 국채는 '10년(29.3조원) 보다 감소한 22.0조원

#### < 예산총량(요약) >

	'10년 (A)	'11안 (B)	증 감 (B-A)	(조원, %)
				%
◇ 총 수 입	290.8	314.6	23.8	8.2
◇ 총 지 출	292.8	309.6	16.8	5.7
◇ 관리대상수지 (GDP 대비, %)	$\Delta 30.1$ ( $\Delta 2.7$ )	$\Delta 25.3$ ( $\Delta 2.0$ )	4.8	
◇ 국가채무 (GDP 대비, %)	407.2 (36.1)	436.8 (35.2)	29.6	
○ 일반회계 국채	29.3	22.0	$\Delta 7.3$	

## 나. 201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

### (1)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

-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,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 집중 지원
    - 생애기간(life cycle) 중 가장 필요한 ① 보육 ② 아동안전 ③ 교육 ④ 주거·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지원
- |     |   |    |   |     |   |     |       |     |   |    |
|-----|---|----|---|-----|---|-----|-------|-----|---|----|
| 영유아 | ⇨ | 아동 | ⇨ | 중고생 | ⇨ | 대학생 | ⇨     | 청장년 | ⇨ | 노인 |
| 보육  |   | 안전 |   | 교육  |   |     | 주거·의료 |     |   |    |
-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⑤ 장애인 ⑥ 노인 ⑦ 저소득층 ⑧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편성

### (2)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

- 우리 경제의 「미래 도약 - 지속가능 성장 - 함께하는 성장」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중점 지원
  - 미래 도약을 위해 ① 신성장동력 확충 ②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
  -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③ 4대강 살리기 ④ 기후변화 대응 ⑤ 글로벌 리더십 강화
  -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⑥ 농어업·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⑦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⑧ 일자리 창출

### (3)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

- 재정수지를 금년보다 개선하고, '13~'14년 균형재정 달성
  - 국가채무도 '14년까지 30%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

### 3.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

#### < 일자리 창출 대책 >

##### **가. 추진 배경**

-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, '08년의 부진(+14만명)과 '09년 고용감소(△7만명)의 여파로 아직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
  -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늘려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
- 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

##### **나. 추진 방향**

-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구조개선 대책을 지속 발굴·추진
  - 서비스산업 규제완화·기업환경 개선, 대학·기업간 클러스터화 등 실용형 인력양성 지속 추진
  -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등 대·중소 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
- 하반기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종합대책 수립 추진
  - 그간 추진해 온 대책들을 내실화하고, 학력·취업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
-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제정지원 일자리 규모는 올해 수준 유지
  - \* ('10) 58만명(연간 38만명), 2.7조원 → ('11안) 56만명(연간 40만명), 2.5조원
  -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(상·하반기 각 2만명) 등 실시

## < 서민물가 안정대책 >

### 가. 추진 배경

- 최근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고,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소지
  -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리 확산을 사전에 차단 필요
- 독과점 시장구조, 유통구조 비효율성 등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은 원인도 지속

### 나. 추진 방향

-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안정 도모
  - 계약재배 및 의무수입 물량 확대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및 관세율 인하를 통한 주요 공산품 가격안정 유도
  - 셀프주유소 확산, 연탄가격 동결 등 에너지 관련 가격 안정, 학원비 공개, 초당요금제 확대 등 교육비와 통신비 절감 유도
  - 지방공공요금 안정 유도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유도
-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·유통구조 효율화·소비자 감시 강화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  - 산업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한 독과점 구조 개선 및 병행수입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
  - 농축수산물·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·품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
  - 중기요금 협의제 도입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 유도

## 4.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

### 가. 현황

-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었으나,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
  - \* 국가채무(GDP대비 %, '09년) : (G20평균) 72.5, (한국) 33.8
  - \* 재정수지(GDP대비 %, '09년) : (G20평균) △7.5, (한국) △4.1
  
-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 발생 이전에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
  -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균형재정을 조기에 회복하고, 저출산·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에도 미리 대비
    - \* 美, 獨, 英 등 주요국은 이미 재정건전화 노력에 착수하였으며, G20 정상회담('10.6월)에서 '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, '1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하향추세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 방향 제시

### 나. 재정운영기조

-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강화
  -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핵심 국책과제를 중점 지원
  - '09~'13 계획에서 제시한 균형재정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
  
-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, 지출 생산성 제고, 재정관리 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 제고

## 다. 재정운용 목표 및 재정건전화 방안

□ (재정운용 목표) '13~'14년 균형재정 달성 및 '14년 국가채무 30%대 초반 수준 유지

○ (재정수지) 관리대상수지는 '13년에 GDP 대비  $\Delta 0.4\%$ 로 개선되어 '14년 흑자 전환(통합재정수지는 '11년 흑자전환)

○ (국가채무) '10년 GDP 대비 36.1%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'1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.8% 수준

\* '09~'13 계획상 '13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.9%

< 중기 재정운용 모습(GDP 대비, %) >

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
◇ 관리대상수지	$\Delta 2.7$	$\Delta 2.0$	$\Delta 1.1$	$\Delta 0.4$	0.2
◇ 국가채무	36.1	35.2	35.1	33.8	31.8

□ (재정건전화 방안) 세입기반 확충, 지출생산성 제고,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

○ 비과세·감면제도 제로베이스 검토, 세무검증제도 도입, 과표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

○ 사업관리 강화, 성과미흡사업 예산삭감, 유사·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

\* 위기극복 한시지원 사업은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여 구조조정

○ 국가채무관리 강화,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

- 적자성 채무 비중 축소('13년까지 50% 이내) 및 국고채 만기 장기화·분산 등 국가채무의 재무적 위험 관리 강화

-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 보다 매년 2~3%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

- 성과계획 검증 강화 등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보조금 사업 일몰제 도입 등 추진

## 5. 미래 성장동력 확충

### 가.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

□ (추진 현황)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「서비스산업 선진화」를 지속 추진

\* '08~'09년 중 서비스수지 개선, 투자 활성화, 내수기반 확충 등 총 5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

○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·추진 중

\* 콘텐츠·미디어(4.8), 사회서비스(5.27), 관광·레저(7.15), 교육(8.11), R&D(9.9) 既발표

#### < 주 요 내 용 >

- ① (콘텐츠·미디어·3D) 글로벌 펀드 조성, 아시아 최대 컴퓨터그래픽(CG) 생산 기지화 추진, 3D 활성화를 위한 신규 응용분야 발굴 등
- ② (사회서비스) 간병서비스 제도화,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, 보육바우처 지원 등
- ③ (관광·레저산업) 4대 지역관광 으뜸명소,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여건 개선, 쇼핑·생태·해양·항공 관광활성화 등
- ④ (글로벌 교육서비스) 외국인 유학생 및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유치 촉진 등
- ⑤ (연구개발서비스업)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수요 창출, 인프라 확충 등

□ (향후 계획)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「서비스산업 선진화」 추진

○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보건·의료, 고급 관광·레저산업 등에서 추가적인 과제 발굴·개선

○ 법률·회계서비스 등 「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」 마련

## **나. 녹색성장 적극 지원**

- (추진 현황)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및 우리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충을 위해 「재정·금융지원 강화방안」 마련('10.7)
  -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재정투자와 세제 지원, 녹색금융 등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방안 제시
    - \* '09~'13년간 107조원을 녹색분야에 우선 투자, 녹색 R&D예산 확대('13년 3.5조), 녹색기술에 대한 R&D세액공제 확대, 신성장동력산업펀드 조성 등
- (향후 계획) 녹색산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충과 함께 녹색 R&D체계 개선, 녹색금융 활성화 등 지속 추진
  - 녹색 R&D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,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「녹색 R&D사업 공동·연계 강화방안」 마련
  - 녹색인증제 활성화, 녹색 금융상품 세제지원 등을 통해 녹색 분야에 민간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

## **다.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**

- (추진 현황) 금년에 4대 중점분야(물류, 건설, 입지, 외국인투자)에 대한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·추진 중
  - \* 건설분야는 既 발표(8.11) :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 시행, 페이퍼컴퍼니 퇴출 촉진,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
  - 이와 병행, 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(8.11일 1차 발표)
- (향후 계획) 입지·외국인투자 등 중점분야별 기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추진
  - 간담회,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경영 애로 사항의 적극 발굴·해소노력 계속

## 6. 외환시장 안정

### 가. 최근 환율동향

- 10.8월말 1190원대에서 움직이던 달러/원은 FOMC 양적완화 기대, 주가 연고점 갱신 등의 영향으로 1140원대까지 하락

< 최근 달러/원 환율 동향 >

	09년말	10.1말	8말	9.24	9.27	9.28	9.29	9.30
달러/원	1164.5	1161.8	1198.1	1155.2	1148.2	1146.3	1142.0	1140.2
전일비(원)	△6.7	△3.4	+6.1	△6.1	△7.0	△1.9	△4.3	△1.8

- FOMC의 양적완화 시사\*에 따른 유로화 급등과 위험통화 선호현상으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시현

\* 9.21일 FOMC는 성명을 통해 완만한 경기 회복을 유지키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

-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, KOSPI 연고점 갱신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도 달러/원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

\* KOSPI : (10.1말)1602 → (5말)1642 → (8말)1743 → (9.30일)1873

### 나. 향후 계획

- 경제 펀더멘털 및 시장수급이 반영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,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 시행
- 일본의 시장개입에 따른 美·中·日·EU간의 환율 정책 대립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통화 움직임 및 타국 환율정책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

## 7. 국고관리의 효율성 제고

### 가. 국고금 관리체계 선진화

- 국고금 조달규모·시기 최적화 및 유휴자금 최소화를 통해 재정활동 비용 절감
  -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 수입지출을 통합관리하던 것을 '11.1월 부터 3개 특별회계(조달·우편사업·책임운영기관)를 편입하여 통합관리
  - 「국고자금 집행지침」에 따라 각 부처의 배정자금이 계획대로 지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고금 조달 축소(10.10월 시행)
  - 국고지출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잔고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용

### 나.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·활용

- 총괄청(기획재정부)의 국유재산 통합관리 기능 강화(국유재산법 개정)\* 및 국유지 무상사용·양여 억제(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)\*\*
  - \* 국유재산관리청 : (현행) 행정재산은 각 부처, 일반재산은 기획재정부 (개선) 행정·일반재산 모두 기획재정부
  - \*\* '10.9월 현재 164개 법률에서 184개의 특례 규정

### 다. 정부 배당수입 기반 확충

-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「배당산정기준」을 제정·운용하여 정부배당 수입 제고('09 회계연도 배당결정부터 적용)
  - \*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을 확충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27개 출자기관 설립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계류 중

### 라.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도모

- 국고채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국채 발행비용 최소화 및 국고채 조기상환, 장기채 발행확대를 통한 국가채무 만기 분산·장기화

## 8. 공공기관 선진화

### 가. 추진 현황

- 現 정부 출범이후 6차례의 '공공기관 선진화 계획'을 수립, H/W 구조조정과 S/W 개혁 추진
  - \* 정원감축(△2.2만명), 통합(36→16개)·폐지(5개), 매각·상장(6개) 등
- 그간의 성과가 공공기관의 내부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자율책임경영 확산,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등 추진 중

### 나. 향후 계획

- 공공기관이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·책임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
  - 하반기 중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\*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대상기관의 추가 선정여부 검토
    - \* 인천국제공항공사, 중소기업은행, 한국가스공사, 지역난방공사
  -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능력·성과중심의 실질적 연봉제로 개선 유도
    - \*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기 권고('10.6.30)
-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기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더불어 추가방안을 수립·추진
  -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,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
  - 중장기 재무관리계획\*(12년 시행)에 부채관리방안 포함
    - \* 지난 '10.4월, 자산 2조원이상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해 중장기(5년)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

## 9.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

### 가. 그 동안의 추진실적

- 금년 의장국으로서 주요이슈 논의를 적극 주도하는 한편, 11월 서울 정상회의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
  - 금년 1~9월 중 6차례 G20 재무장·차관회의를 개최
    - \* 2월 송도 차관회의, 4월 워싱턴 장관회의, 6월 부산 장관회의, 9월 광주 차관회의 등
  -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화, IMF 쿼터개혁 시한 단축 ('11.1월 →'10.11월) 등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의제를 반영

### 나. 향후 준비계획

- 10월 중 개최될 재무장·차관회의\*를 통해 11월 서울 정상회의 주요 성과목표의 논의를 가속화
    - \* 10.8일 워싱턴 차관회의, 10.21~23일 경주 장·차관회의
  - IMF 쿼터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, 금융규제 강화, 금융안전망 구축 등 주요의제의 추진방안을 구체화
  -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지속 경주
    - \* 9월 중 러시아, 독일, 프랑스, 브라질, 미국 등 주요국을 순방하였으며, 10월 IMF/WB 연차총회시 주요국가와 양자면담 추진 예정
- 
-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공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, 중간적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
    - 특히, 개도국들의 관심이 높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, 저소득국 개발 이슈 등은 Korea Initiative로 중점 추진

## 10. 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

### 가.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

-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 및 자원 확보,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
  - 미국, EU, 페루 등 기타결 FTA의 조속한 발효와 취약산업 지원대책\* 수립, FTA 활용률 제고 노력\*\* 등을 적극 전개
    - \* 한·EU FTA 잠정발효('11.7월)에 앞서,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예정('10.11월)
    - \*\* 컨설팅·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'FTA 활용지원 종합대책' 기수립('10.7월)
  - 한중 FTA 사전협의를, 한일 FTA 실무협의를 등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, 협상중인 FTA\*의 진전 도모
    - \* 콜롬비아, 호주, 뉴질랜드, 터키, 캐나다 등

### 나. ODA 확대 등 개도국 협력 강화

-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등 ODA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하고,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을 대표 원조사업으로 육성
  - \* ODA/GNI 비율(%) : (08) 0.09 → (12) 0.15 → (15) 0.25
  - EDCF 사업규모(억원) : (09) 3,128 → (10) 4,700 → (11) 6,047(잠정)
  - KSP 지원규모(억원) : (09) 50 → (10) 75 → (11) 150(예산안 기준)
-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(CAS)을 수립(3개국)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, '아시아 개발협력회의'를 개최(11월)
- 신흥개도국과의 장기/포괄적 경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, 우리기업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
  - BRICs, 아프리카 등과의 경제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하고, 수은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지원 여력을 지속 확대
    - \* 브라질(6월), 중국(7월), 러시아(9월), 아프리카(9월), 인도(12월 잠정) 등과 장관급 협의체 개최

## <첨 부>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

개정 법률안	주요 내용
제출일	
① 소득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민·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</li> <li>-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</li> </ul> </li> <li>○ 저출산·고령화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○ 과표양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무검증제도 도입</li> <li>-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·감면 제한</li> </ul> </li> </ul>
'10.10.1	
② 법인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회계기준(K-IFRS)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신고조정 허용</li> <li>- 기능통화 도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</li> </ul> </li> <li>○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지원세제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(5%→10%)</li> <li>- 법정기부금 대상 공익성 기준 명확화</li> </ul> </li> </ul>
'10.10.1	
③ 조세특례제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</li> <li>○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</li> <li>○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</li> <li>○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범위 조정</li> </ul>
'10.10.1	
④ 상속세및증여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까지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</li> </ul> </li> <li>○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10년간 보유·동거 요건을 충족시 공제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○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 근거조항 마련</li> </ul>
'10.10.1	

⑤ 부가가치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 <b>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</b> 일몰연장('10.12.31→'12.12.31)</li> <li>* 공제율 : 음식·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(2%→2.6%), 기타 개인사업자(1% → 1.3%), 공제한도 : 500만원→700만원</li> </ul>
'10.1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변경 등</li> </ul>
⑥ 개별소비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마장의 <b>장외발매소</b>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</li> </ul>
'10.1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외교공관 및 외교관</b>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</li> </ul>
⑦ 증권거래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거래세 과세</li> <li>○ 거래세가 과세되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 <b>우정사업본부도</b> 거래세 과세</li> </ul>
'10.1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0.1.1부터 모든 기금에 대해 거래세가 과세 중이므로 세법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기금관리운용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 장인 기금을 국가의 범위에서 제외</li> </ul>
⑧ 국세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<b>가산세 한도</b>(현재 1억원)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</li> </ul>
'10.1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액 조세불복사건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함</li> </ul>
⑨ 국세징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공매절차 개선</b></li> <li>- 공매개시결정 등기 또는 등록절차 신설</li> <li>- 배분요구의 종기를 첫 입찰기일 이전으로 설정하여 공매물건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확정</li> <li>- 매각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신설</li> </ul>
'10.10.1	
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정상가격 산출방법</b> 적용시에 우선순위 없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·적용</li> </ul>
'10.1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시 및 주식 양도시 익금불산입 기간(현행 10년 이내)을 폐지하여 이중과세 방지</li> </ul>
⑪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외교공관 및 외교관</b> 등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교통세 면제</li> </ul>
'10.10.1	

⑫ 주세법 '10.10.1	○ 과실·채소류를 탁·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
⑬ 농어촌특별세법 '10.10.1	○ '11.1.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 법률*로 분리·시행됨에 따라 농특세법이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 정리 *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
⑭ 관세법 '10.10.1	○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·부품(43개 품목)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○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 신설 ○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확대 및 허위·오인 상품표시 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등
⑮ 세무사법 '10.10.1	○ 세무사(국세경력자인 세무사 포함)에 대한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 ○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동 세무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
⑯ 국유재산법 '10.10.1	○ 현재 50여개 부처에서 분산관리중인 국유재산을 총괄청(기획재정부)이 통합관리 ○ 중장기적·전정부적 관점에서 부처별 관리·처분 계획을 종합·조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○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청사신축, 비축토지 매입 및 국유지 개발을 지원
⑰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'10.10.1	○ 국유재산 특례 신설시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부장관의 심사 의무화 ○ 국유재산 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는 정비
⑱ 국가재정법 '10.10.1	○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'국유재산법'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동 기금의 근거법률(국유재산법)을 규정하려는 것임 *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(제5조 제1항)
⑲ 복권 및 복권기금법 '10.10월말 예정	○ 복권기금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 강화 ○ 복권구매자 권익 강화 ○ 복권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 보완